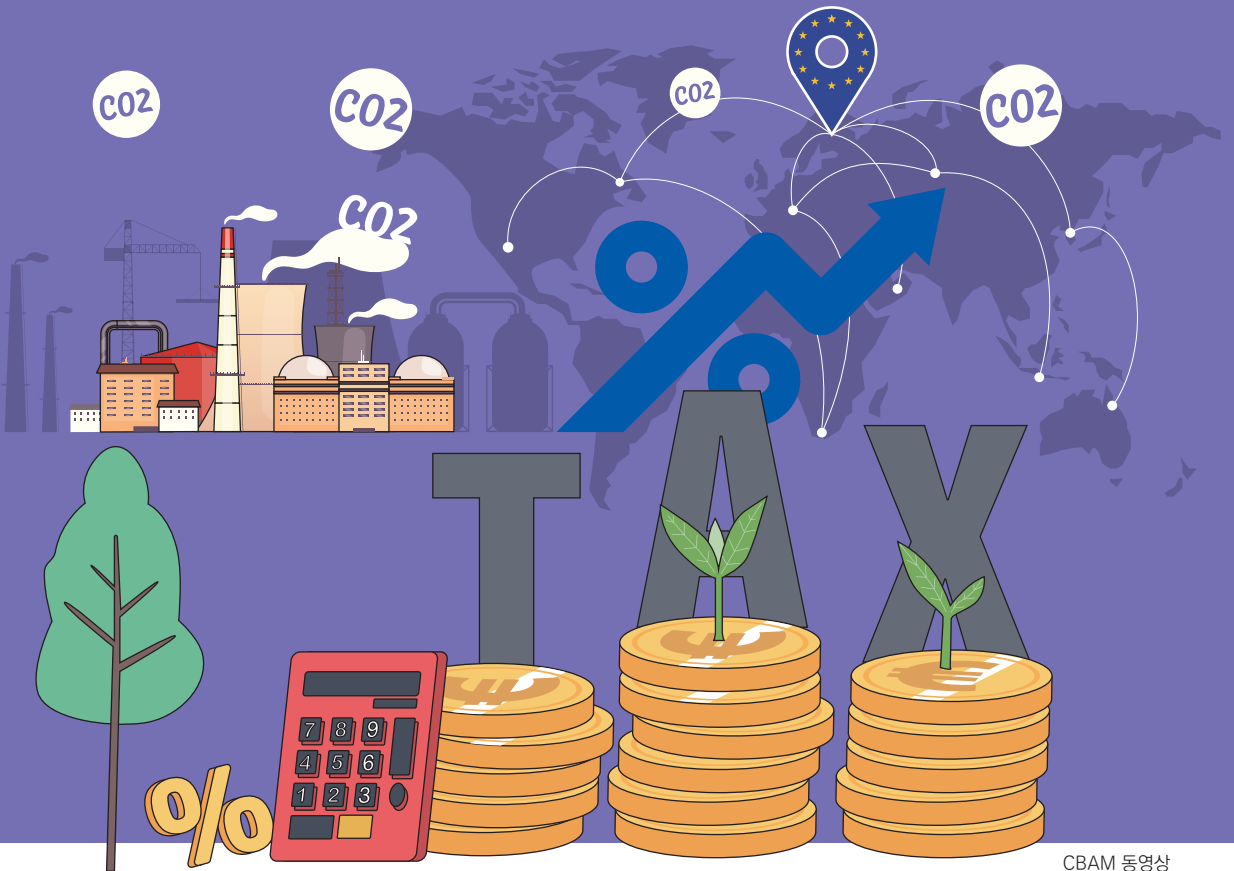


EU 탄소국경조정제 (CBAM)

Q&A



CBAM 동영상



CONTENTS



Part 1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규정 개요		02
1. 추진 배경 및 목적		02
2. CBAM 주요 내용		04
Part 2		
알기 쉬운 CBAM Q&A		11
1. CBAM 전환기간 보고서 작성		12
2. CBAM 본격시행		18
3. 향후 일정 및 전망		23
Part 3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		26
1. KOTRA 지원 사업		26
2.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28
3. CBAM 법안 조항표		29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규정 개요

01 | 추진 배경 및 목적

EU 탄소국경조정제(CBAM)란?

EU집행위는 2021년 7월 14일 Fit for 55* 패키지 일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제안했습니다.

* '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90년 대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이 법안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U가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시설이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생산 원가가 상승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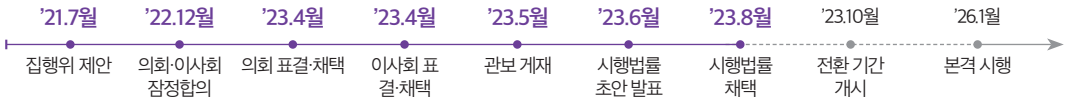
주요 내용

- 대상품목 수입 시 내재된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토록 의무화
-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에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여
- 이후 본격 시행기(2026년 1월~)부터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필요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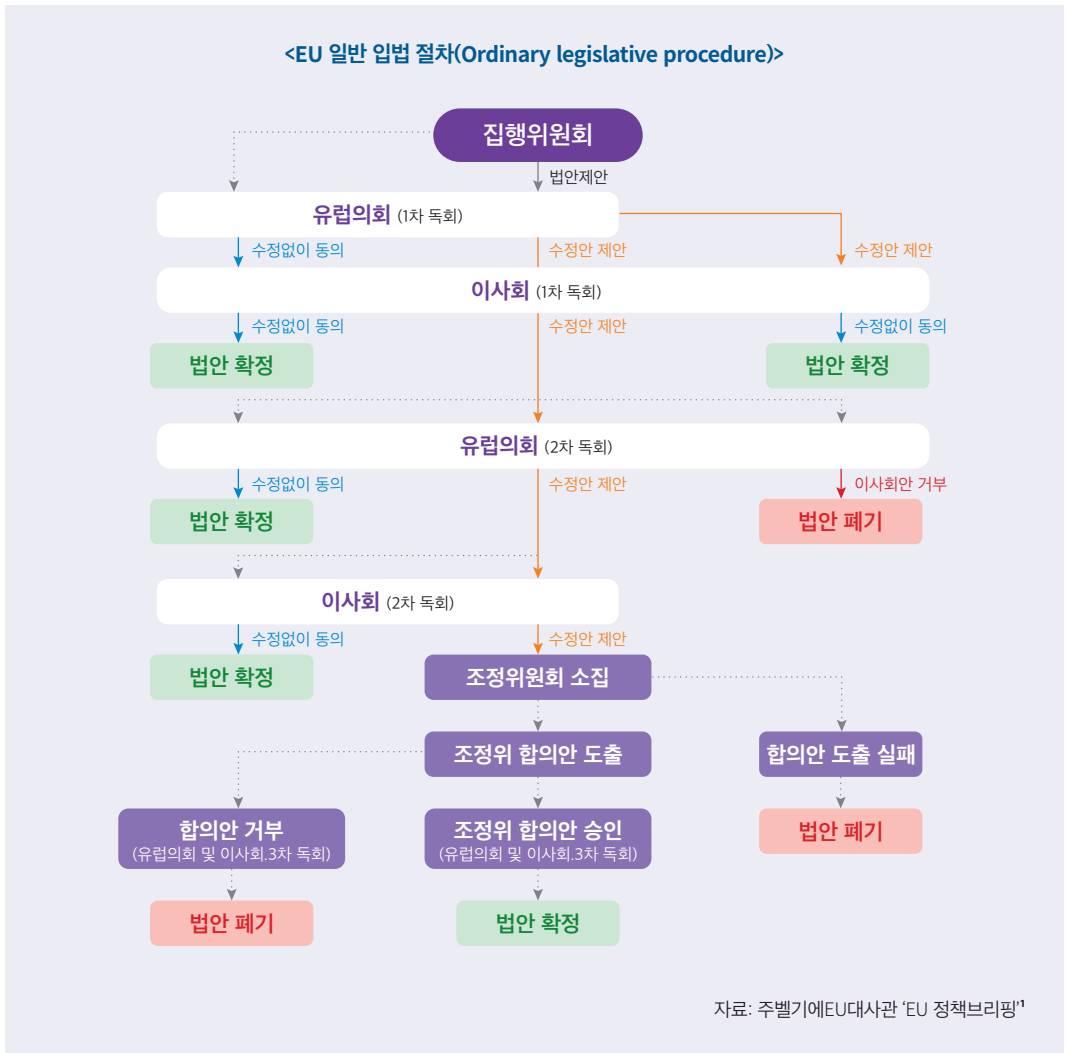
-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
- 적용국가 EU와 전력시장이 통합된 국가 또는 EU 회원국의 역외 영토 등을 제외한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

입법 동향 및 시행시기



CBAM 규정에 대한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2023년 5월 16일 EU 관보에 게재, 다음날인 5월 17일부로 최종 발효 되었습니다.

수입신고자의 승인, 탄소배출량 검증, 기저불 탄소가격 계산 등 세부준칙은 2023년 3분기부터 2025년 2분기 사이 단계적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1 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23743/list.do

우리기업의 체크포인트

- ✓ **탄소발자국 정보 요청** CBAM 시행에 따라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U시장에 진출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대상품목 확대** 향후 EU는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기타 제품으로 CBAM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품목 확대 관련 현지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적용 유망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은 탄소발자국 정보 확보 등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 ✓ **이행법률 채택** 수입신고자의 승인부터 탄소배출량 검증, 검증기관 인정,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계산 방식 등 세부사항이 추후 이행법률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부 제도 시행까지 이행법 입법 동향을 잘 확인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2 | CBAM 주요 내용

적용범위

- **대상품목**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품목군별 세부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자 협의 과정에서, 철강의 특정 전구체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포함됨.
 - 유럽의회가 포함시킨 유기화학, 폴리머의 경우 1차 대상품목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추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CBAM 적용 대상 품목>

품목	세부품목(품목코드)
시멘트	252310, 252321, 252329, 252390, 250700, 252330
전력	271600
비료	280800, 2814, 283421, 3102, 3105(제외품목 : 310560)
철강	72(일부 철강류 제외*),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00, 7318, 7326, 260112 * 제외품목 : 7204, 72022, 72023, 720250, 720270, 720280, 720291, 720292, 720293, 72029910, 72029930, 72029980
알루미늄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7610, 761100, 7612, 761300, 7614, 7616
수소	280410
전구체	26011200, 72021, 72024, 72026, 25070080
다운스트림	7318, 7326, 7616

- **적용국가** 일부국가를 제외한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에 CBAM이 적용됩니다. 적용 예외 국가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세우타 등 외부영토입니다.
- **배출범위**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실질 탄소 배출량
 - 철강·알루미늄·수소는 직접배출만 적용 대상이나, 시멘트·전력·비료는 사용된 전력에 내재된 간접 배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전구체(260112)의 경우 전력에 내재된 간접배출도 포함됨

<배출가스 구분>

구분	정의	비고
Scope 1	직접 배출. 기업이 소유, 통제하는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보일러, 용광로, 화학 물질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 2	간접 배출. 기업이 구매한 전기, 열 생산 시 배출된 온실가스	에너지 효율에 투자하거나 저탄소 에너지원로의 전환을 통해 감축 가능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가치 사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중 Scope 1과 2에 포함되지 않은 것	제품 사용, 유통, 폐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자료: ERCST²

- 실제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값(Default Value)으로 배출량을 산정

기본값(Default Value) 측정 방법은?

기본값은 수출국 내 동일품목의 평균 탄소배출 집약도(average emissions intensity)에 따라 설정됩니다. 즉, 각 수출국가에서 가장 실적이 미흡한 10% 제조 설비의 평균 배출로 측정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EU내 가장 실적이 미흡한 5% 제조설비 평균 배출 강도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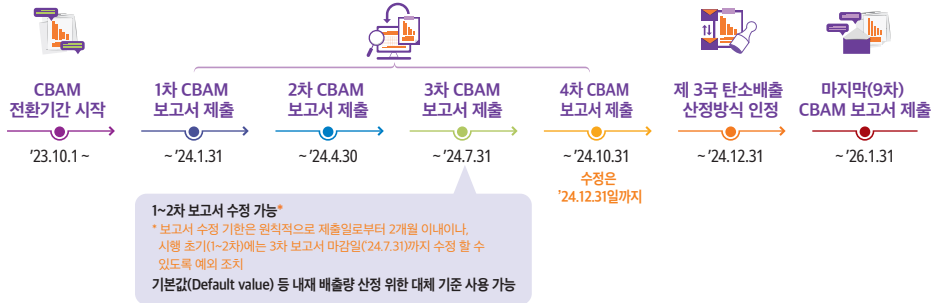
- **배출량 검증**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은 공인 인증기관(Verifier accredited)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인증 기관 관련 세부 기준은 추후 집행위가 시행법률과 위임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환기간

✓ **주의** 아래 내용은 EU 집행위에서 2023년 8월 17일 발표한 1차 이행법률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안 최종본 발표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https://ercst.org/wp-content/uploads/2021/09/20210921-Report_Role-of-Supply-Chain-Emissions-in-Decarbonization-and-Compliance-v17.pdf

<CBAM 전환기간 Timeline>



- **전환기간**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집행위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환기간 동안 수입신고자는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보고서 제출 의무만을 부여받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보고 시한**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전환 등록소(CBAM Transitional Registry)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전환기간 시행 후 첫 번째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 필요합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2개월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세 번째 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 전까지는 앞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보고서의 수정 가능합니다.
- **보고항목** 수입상품 CN코드 및 수량, 원산지 국가, 사업장 위치, 생산공정, 내재된 직간접 배출량, 전력소비량, 생산국에서 지지불한 탄소가격 등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시행법률 부록 1(ANNEX I)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CN코드란?

CN코드는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목분류 체계로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인 HS코드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CN코드 중 앞에서 6단위까지 기본 코드에 해당하며, 7~8단위 숫자는 EU의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6단위의 기본 코드는 HS코드와 일치하므로, 국제통일 상품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HS코드와 비교하여 품목의 규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배출량 산정방식** EU ETS 기준을 차용해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을 계산한 뒤 총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제품별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집행위가 발표한 시행법률 부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EU 방식과 범위 및 정확도가 유사한 산정방식을 조건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산정방식만 인정됩니다.

제3국 산정방식 인정 (~'24년 12월 31일)

- 제조시설 소재국 내 탄소가격 제도 또는 의무적 배출 모니터링 제도
- 제조시설 배출 모니터링 체계(단, 공인 검증 기관의 검증 필요)

- 2024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자가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 외 산정방식을 사용해 직접배출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시행법을 원문 함께보기

부록3(ANNEX III) 생산설비 수준의 배출량 데이터, 생산공정에 따른 배출량,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 및 기저불 탄소가격 결정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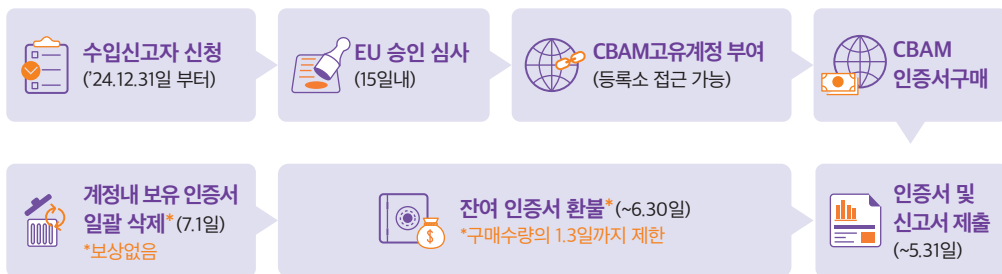
- 시행 관련 공공 의견수렴 페이지 내 법률 초안(Draft Act) 부분에서 다운로드 가능



- **탄소가격** 생산지 국가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지불한 경우 지불한 탄소가격의 형태와 금액, 원산지 국가명, 보조금 등 기타 보상 여부, 관련 법조항, 탄소가격 및 보상내역에 포함된 내재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 **평가** 집행위는 보고의 누락,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보고 등 보고 준수 여부 관련 사전 평가를 시행하고, 회원국 관할당국에 평가 결과를 전달합니다. 이후 관할당국은 3개월간 집행위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평가 후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 **벌금** 의무 미준수 시 전환기간 동안에는 내재된 배출량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회원국 관할당국이 누락된 정보 범위 등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 단 보고 미준수 기간이 6개월을 초과 또는 부정확한 보고 2회 연속 제출 시 더 높은 벌금 부과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시스템** 전환기 동안 수입자가CBAM 전환기 등록소(Transitional Registry)에 등록하고, 관련 알림을 수신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트레이더 포털'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CBAM 신고절차

<CBAM 절차 한눈에 보기>



수출국가에서 탄소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인증서 수량의 차감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자는 매 분기말 연초부터 수입된 물량의 누계 탄소배출량의 최소 80%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등록소 내 고유계정에 확보해둬야 합니다. 전년도 구매한 인증서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보다 많을 경우 6월 30일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하나, 환급 수량은 전년도 수입자가 구매한 총 인증서의 1/3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매년 7월 1일이 되면 계정에 남아있는 인증서가 별도의 보상 없이 일괄 삭제 됩니다.

운영 형태

- CBAM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별로 관할당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EU집행위는 CBAM 등록소(Registry) 및 공통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을 설치해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CBAM 등록소란 수입신고자의 계정 및 인증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곳에서 수입 신고자 및 제조사 정보, EORI 번호, CBAM 계정번호, 인증서의 가격 및 구매, 환불 일자 등 정보가 관리 될 예정입니다. 집행위는 승인된 수입신고자에 대해 고유계정을 생성하고, 해당 계정번호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등록소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전송, 진행절차 등은 추후 시행법률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공통 중앙 플랫폼은 인증서의 구매, 환불, 취소 등을 전담하며 관련 정보는 매일 근무 종료 시점에 CBAM 등록소로 전송됩니다. 집행위는 플랫폼-등록소 간 정보흐름을 촉진하고,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회원국 관할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재 조치

- 본격 시행기의 경우 기한 내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환기와 마찬가지로 벌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인증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역내에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자가 CBAM 대상품목 수입 시 동 벌금의 3~5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 **2024년 말까지** 집행위는 CBAM 대상품목의 하위품목 중 CBAM 적용이 필요한 품목을 식별하는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2025년 말까지** 집행위는 아래 사항을 평가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 보고서에는 적용배출범위 및 대상품목 확대, 기후대응 관련 글로벌 논의의 진전사항, CBAM 시스템, 간접 배출량 산정방식, 개도국에 대한 영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BAM 적용 확대 고려중인 범위·대상품목

- 직접배출 보고로 지정된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에 대한 간접배출 포함 여부
 - CBAM 적용대상 제품의 운송 및 운송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내재 배출량
 - 유기화학물질·폴리머 등 기타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품목
 - 적용대상 제품에 투입되는 소재(전구체) 등
-
- **2027년 말까지** 집행위는 CBAM 이행 모니터링 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 이후 2년 주기로 모니터링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고서에는 수출 관련 탄소누출, 역내 영향, 적용 대상품목, 비용 상승, 산업계 영향, 우회 관행, 개도국 영향, 벌금, 거버넌스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2026년부터** 전환기 종료 후 2년 주기로 역내 수출상품의 탄소누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 시 WTO 규정에 합치되는 입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적용 면제** 적용 대상품목일지라도 최소 기준(De Minimis)을 두고 150유로 이하의 소형 품목(여행자 수화물 포함) 또는 군사용도 물품은 규정 적용을 면제합니다.
- **우회 방지** 집행위는 최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분할 선적을 하거나, HS코드 변경을 위해 9개월 간 관련 조사가 시행됩니다.
- **개발도상국 지원** 집행위는 최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한시적 예외조치** 역외국에 예측불가능하고 예기치 않은 대규모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타격을 받은 제3국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예외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CBAM Q&A

Q&A로 살펴보는 탄소국경조정제

1. CBAM 전환기간

- Q 01** CBAM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 Q 02** 자료 작성을 하면서 참고할만한 체크리스트는 없을까요?
- Q 03** CBAM에 바로 해당되는 품목이 아닌 관련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는데, CBAM 적용 대상 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Q 04** 원료(Precursor) 또한 CBAM 적용 대상이라면 품목으로 해당된다면 해당 원료(Precursor) 생산 관련 탄소배출량 정보도 포함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 Q 05** EU CBAM은 제품 및 Precursor에서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EU CBAM과 제품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Q 06**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Q 07** CBAM 적용 품목 별로 보고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범위는 전환기간과 본격제도 시행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Q 08**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제도(K-ETS) 하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량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 Q 09**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Q 10** 전환기 동안에도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 CBAM 본격시행

- Q 11** 검증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Q 12** 탄소배출량 검증 보고서를 발급받는 절차와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Q 13** 어떤 기관으로부터 배출량 검증을 받을 수 있나요?
- Q 14** CBAM 인증서를 얼마나 구매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되나요?

- Q 15 CBAM 인증서 가격은 얼마인가요?
- Q 16 EU로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이 직접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 정보를 등록할 수 있나요?
- Q 17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Q 18 어떤 경우에 우회방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나요?

3. 향후 일정 및 전망

- Q 19 아직 법안에 모호한 점들이 많은데 앞으로 시행법률 및 위임법 채택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Q 20 CBAM 대상 품목이 확대 가능성 관련 현지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 Q 21 철강 산업 관련 유의해야 할 EU 차원 규제 또는 논의 동향이 있을까요?

* 동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단순 참고자료로 KOTRA의 공식 의견이나 전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또는 규정 해석에 대한 어떠한 책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01 | CBAM 전환기간 보고서 작성

Q1 CBAM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A 수입업자가 작성하는 CBAM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수입업자가 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해 상품정보 및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발행일, ID, 보고기간 및 연도 • 수입된 상품의 총 수량 및 총 탄소 배출량 • 신고자, 대리인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 • 보고서 제출에 대한 승인 절차
CBAM 상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코드 및 상품 세부 정보 • 수입품 절차 (역내가공 포함) • 수입 물품의 수량 및 상응 배출량 • 등록소에 업로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증빙 문서
CBAM 상품의 탄소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명, 생산지, 연락처 등 제조시설 정보 • 보고 방법론에 따라 작성된 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 직간접 내재 배출량과 연계된 제조설비의 세부 정보 • 지불해야 할 탄소 가격과 제품 및 해당 배출량에 대한 세부 정보

정확한 정보 작성을 위해 EU CBAM은 아래와 같이 데이터 수집 템플릿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이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내용을 입력하여 수입업자(Importer)에게 제공하면, 수입업자는 이를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소에 제출합니다.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 다운받기

아래 QR코드를 통해 CBAM 설정 사이트에서 Resources를 클릭하여, 템플릿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Q2 자료 작성을 하면서 참고할만한 체크리스트는 없을까요? (TUV SUD 제공)

A * 아래 체크리스트는 사전에 확인 또는 준비해야 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CBAM 대응을 위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품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U에서 제공하는 산정방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합니다.

구분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사전 확인	• 당사는 CBAM이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당사는 CBAM의 영향을 받는 EU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경계	• CBAM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조직경계를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근거 (사업자등록증 등)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연간 원료 사용량, 연료 사용량 등 투입물과 제품생산량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 (Fiscal year, Calendar year 등)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생산 공정	• CBAM 수출 제품의 생산 공정이 다른 생산 라인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량, 연료량 및 제품 생산량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ERP, 내부 기준 등)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제품 생산에 CBAM에서 정의한 Precursor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데이터 수집	•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측정된 데이터를 기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데이터 측정에 사용된 계측기의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배출량 산정	•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Parameter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Ex) 온실가스 배출 원료 사용량 및 배출계수	<input type="checkbox"/>
	연료 사용량 및 배출계수	<input type="checkbox"/>
	전력사용량 및 전력사용 배출계수	<input type="checkbox"/>
체계 구축	• 사업장 경계부터 배출량 산정에 이르는 방법론을 망라한 Monitoring Methodology를 문서화하여 구비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자료원 :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FOR INSTALLATION OPERATORS OUTSIDE THE EU

Q3 CBAM에 바로 해당되는 품목이 아닌 관련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는데, CBAM 적용 대상 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TUV SUD자문)

A CBAM 법안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의 CN코드를 CBAM 법규(Annex I List of goods and greenhouse gases)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품목의 코드는 본 자료 4페이지의 대상품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대 품목외에 철강 분야의 일부 원료 및 다운스트림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목	세부품목(품목코드)
전구체	26011200, 72021, 72024, 72026, 25070090
다운스트림	7318, 7326, 7616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품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사 제품 해당 여부 같이 확인하기

Annex I List of goods and greenhouse gas



Q4 우리 회사는 제품 생산시 필요한 원료(Precursor, 전구체)를 다른 협력사에서 제공 받고 있습니다. 원료(Precursor) 또한 CBAM 적용 대상이라면 품목으로 해당된다면 해당 원료(Precursor) 생산 관련 탄소배출량 정보도 포함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TUV SUD 자문)

A EU CBAM에서는 품목별로 생산 공법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CBAM 가이드라인 중 '5. CBAM Goods and Production Routes'에서 각 생산 공법의 전구체(Precursor)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가 CBAM에서 정의한 Precursor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될 경우 원료를 공급한 공급사에 탄소 배출량 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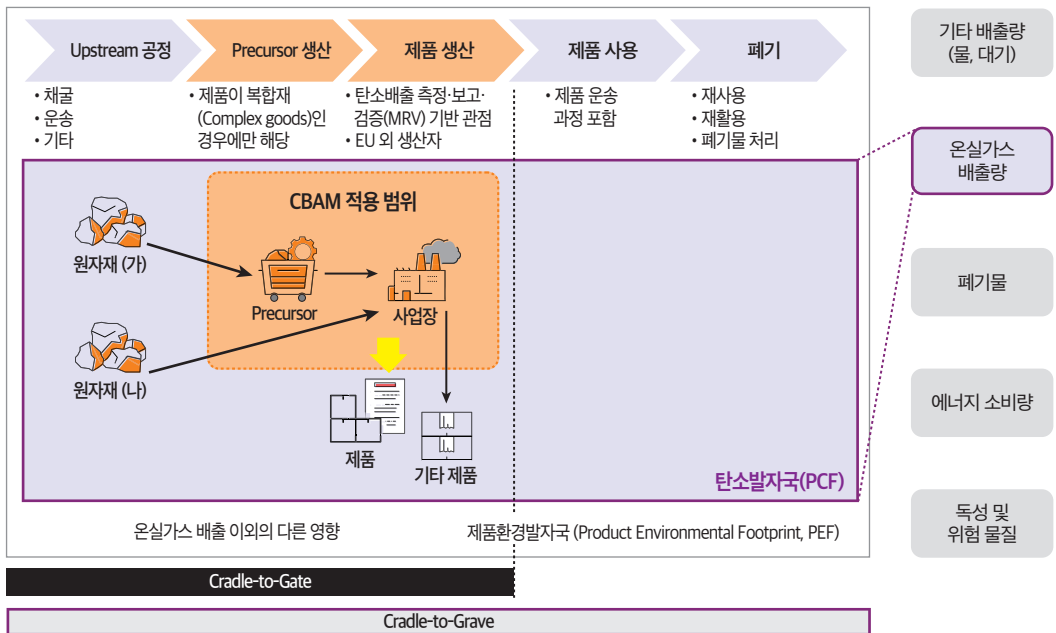
Precursor란?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로 해당 제품 생산 공정 외부에서 생산된 물질입니다. CBAM에서 정의한 Precursor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Precursor의 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Embedded emissions)까지 사업장 운영자(Operator)가 보고해야 합니다

Q5 EU CBAM은 제품 및 전구체(Precursor)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EU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TUV SUD 자문)

A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살펴보자면 원료 채취 및 운송, 전구체(Precursor) 생산, 제품 생산, 제품 사용, 폐기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환경발자국(PEF)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제품 생산 과정 중 투입되거나 배출된 모든 물질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합니다. 제품 환경발자국은 환경 영향 범주별로 구분하여 표시되며, 탄소발자국, 오존층 고갈, 산성화, 부영양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제품탄소발자국(PCF)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영향 범주로서 제품환경발자국의 영향 범주 종류 중 하나로 해당합니다.

EU CBAM은 제품 (제품 생산에 필요한 Precursor 포함)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정 범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발자국, 탄소발자국과 다릅니다. 또한 전 생애주기별로 투입, 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요구하는 제품환경발자국과 달리, EU CBAM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원료, 연료, 기타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Q6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CBAM 규정 첨부4에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이 간략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단순재(Simple goods), 복합재(Complex good)로 구분되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재(Simple goods)

$$\text{산식: } SEE_g^* = \frac{AttrEm_g^*}{AL_g^*}$$

* SEE_g 제품 g의 탄소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량, 'CO2e')

* $AttrEm_g$ 제품 g의 직간접 배출량

* AL_g 보고기간 동안의 제품g의 생산량

▶ CO2e 배출량 = (제품의 직접 + 간접 탄소배출량) / (제품 생산량)

- **제품의 탄소배출량** 사업장 내 조직경계(system boundaries)에서 발생한 배출량 기준. 조직경계 범위는 추후 집행위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할 계획
- **간접 배출량**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전기의 CO2e로 환산량으로, 기본값(Default values)으로 산정. 단, 생산 시설과 전력생산원 간 직접적 기술 연관성을 입증하거나, 또는 해당 전력량에 대한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경우 실질 내재 배출량 적용 가능. 집행위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기본값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

2) 복합재(Complex good)

$$\text{산식: } SEE_g^* = \frac{AttrEm_g^* + EE_{InpMat}^*}{AL_g^*}$$

* SEE_g 제품 g의 CO2e

* $AttrEm_g$ 제품 g의 직간접 배출량

* AL_g 보고기간 동안의 제품g의 생산량

* EE_{InpMat} 원재료·중간재 등 생산에 투입된 물질의 탄소배출량

▶ CO2e 배출량 = [(제품의 직접 + 간접 배출량) + 투입물 배출량*] / (제품 생산량)

$$* EE_{InpMat} = \sum_{i=1}^n M_i \cdot SEE_i \text{ 즉,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양 X 해당원재료들의 배출량}$$

다만 동 산식은 아주 대략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품목별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집행위는 제도 본격 시행 전 시행법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는 2023년 6월 발표된 전환 기간 보고의무에 관한 시행법률 초안 첨부3에도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동 법안은 아직 최종본은 아니나 품목별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있어 사전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7 CBAM 적용 품목 별로 보고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범위는 전환기간과 본격제도 시행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TUV SUD 자문)

A EU CBAM의 본격 시행 전 전환기간을 둔 목적은 새로운 제도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전환기간에는 품목에 상관없이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은 직접 배출량만 보고하고 시멘트, 전력, 비료는 직접 및 간접 배출량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구분	전환기간	시행기
기간	'23.10.01 ~ '25.12.31.	'26.01.01 ~
직접 배출량	전 품목	철강, 알루미늄, 수소, 시멘트, 전력, 비료
간접 배출량		시멘트, 전력, 비료

Q8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제도(K-ETS)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TUV SUD 자문)

A 국내 제도에서 보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EU CBAM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제와 EU의 CBAM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ETS취지는 기업들에게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할당하기 위해 매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조직경계 내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산정하여 보고합니다. EU CBAM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배출권거래제도(EU-ETS)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비교적 덜한 역외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품 각각에 배출권 구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니라 제품 공정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K-ETS는 기업 조직경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므로 생산 공정 단위에서의 데이터 할당이 불필요하지만, EU CBAM은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요청하기 때문에 사업장(Installation)에서 총 에너지, 원료 사용량 등을 생산 공정 단위로 할당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구분	EU CBAM	K-ETS
제도 목적	제품 탄소배출량	기업 탄소배출량
보고 단위	tonCO2eq / 제품 ton	tonCO2eq
산정 단위	생산공정 단위	사업장 단위
보고 주기	분기	연간

Q9 ▶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CBAM 본격 시행기에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값(Default Value)으로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수출국 내 동일품목의 평균 탄소배출 집약도(average emissions intensity)에 따라 설정됩니다. 만약 동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 국가 및 제품에 대한 기본값은 각 수출 국가에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10% 생산설비의 평균 배출 강도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일 경우, 기본값은 EU내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5% 평균 배출 강도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Q10 ▶ 전환기 동안에도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전환기 동안에는 검증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다만 검증 보고서 발급까지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격 시행기가 개시되는 2026년 1월에 앞서 내재된 배출량 검증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관련 집행위의 시행법률 및 위임법률 발표 여부를 주시해 EU 규범에 부합하는 검증 방식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CBAM 본격시행

Q11 ▶ 검증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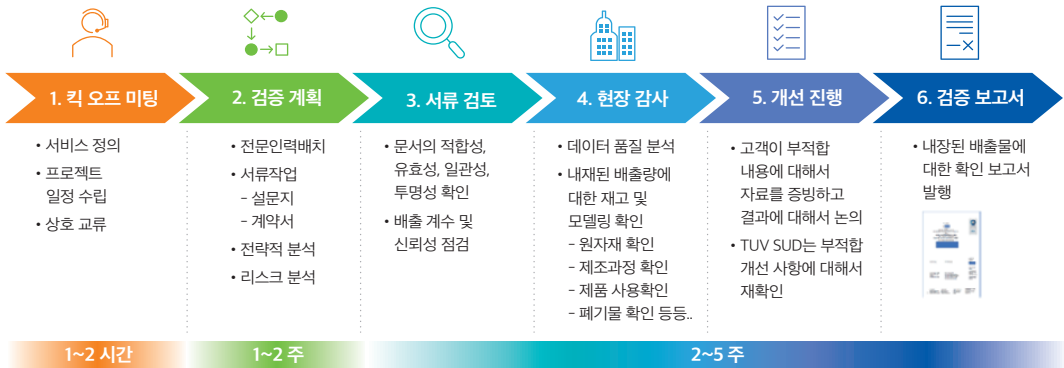
A 집행위는 CBAM 규정 부록6을 통해 검증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증 보고서 포함 내용(부록6, 2항)>

- (a) 생산시설 정보
- (b) 생산자 연락처
- (c) 대상 보고기간
- (d) 검증자의 이름과 연락처
- (e) 검증기관의 인정번호(accreditation number)·이름
- (f) 생산시설 방문 일자(해당 시) 또는 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
- (g) 대상기간 내 생산된 상품 유형별 수량
- (h) 대상기간 생산시설의 배출량
- (i) 생산시설의 배출량이 상품 유형별로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한 설명
- (j) 대상 상품과 관련이 없는 상품의 수량,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 (k) 복합재의 경우 사용된 투입 물질(전구체)별 수량, 사용된 투입 물질(전구체)와 관련된 배출량, 실제 배출량을 사용하는 경우 투입 물질(전구체)이 생산된 시설 정보 및 물질 생산 시의 실제 배출량

Q12 ▶ 탄소배출량 검증 보고서를 발급받는 절차와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 검증기관인 TÜV SÜD 한국법인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검증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단, 일정은 고객의 규모와 공정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료: TÜV SÜD

통상 보고서 발급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검증에 대한 CBAM 시행법률이 정해져야 정확한 소요 시간 예측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Q13 ▶ 어떤 기관으로부터 배출량 검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집행위는 CBAM 규정 18조를 통해 검증기관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련 법령인 ‘데이터 검증 및 검증자 인정에 대한 시행법률(EU2018/2067)’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경우 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국가인정기구(A national accreditation body)도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인정기구가 검증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동 규정 부록6의 검증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동 규정 제8조~제10조에 따라 내재된 배출량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집행위는 검증기관 자격요건 등을 담은 시행법률과 검증기관 인정, 인정 철회, 상호 인정, 인정 기구 간 상호 평가 등에 대한 위임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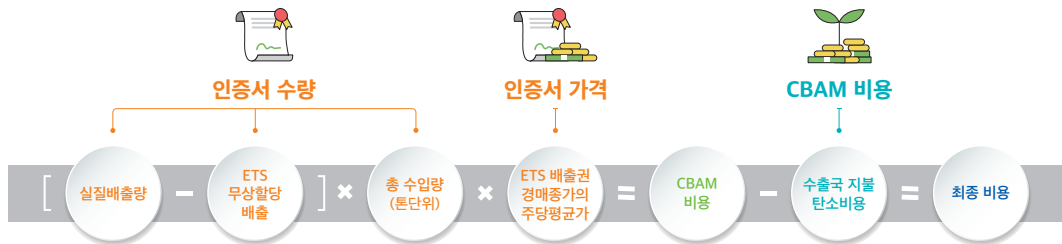
위임법률(delegated act)과 시행법률(implementing act)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임법률과 시행법률은 모두 규정, 지침과 같은 입법 법률(Legislative act)에 근거해 채택하는 법률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만 법안의 성격과 입법 절차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임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또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 - 집행위가 제안하며, 의회 및 이사회는 위임법률이 제안된 지 2개월 내 이의제기를 통해 폐지 가능
시행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양식, 절차, 마감일 등 절차적인 내용을 포함 - 집행위는 제안 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와 협의 필요하며 상위 법률에서 어떤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할지를 명시

Q14 CBAM 인증서를 얼마나 구매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되나요?

<CBAM비용 산정>



A 기본적으로 수입신고자는 수입하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나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이 있을 경우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탄소가격이 실질적으로 지불된 경우에만 차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리베이트 등 기타 형태의 보상이 고려됩니다. 수입신고자는 CBAM 신고서를 제출한 해로부터 4년 뒤까지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 EU 기업이 EU 배출권거래제(ETS)에서 부여받는 무상할당만큼을 구매 필요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EU는 CBAM을 도입함에 따라 CBAM 적용 분야의 무상할당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기업의 부담 또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연도별 무상할당 감축 목표: '26년(2.5%), '27년(5%), '28년(10%), '29년(22.5%), '30년(51.5%), '31년(61%), '32년(73.5%), '33년(86%), '34년(100%)

EU 기업들은 무상할당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2021년 기준 EU 산업부문의 배출량은 612.9백만톤, 부여된 무상할당은 517.1백만톤으로 무상할당 비중이 약 84%에 이릅니다.

<EU ETS 부문별 무상할당 현황>

(21년 기준, 단위: 백만톤)

구분	산업	산업				항공	발전
		시멘트	화학	철강	기타		
배출량	612.9	133.8	105.1	128.1	245.9	27.7	722.4
무상할당	517.1	112.3	91.6	142.8	170.4	23.6	27.7

자료: Sandbag

Q15 CBAM 인증서 가격은 얼마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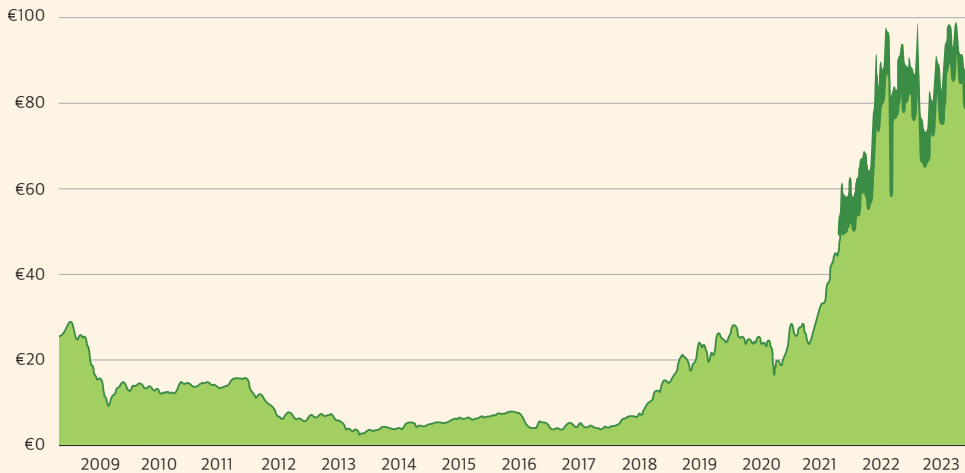
A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가가 적용됩니다. 인증서 가격은 매주 첫 근무일 EU 관보(<https://eur-lex.europa.eu/oj/direct-access.html>)에 게시됩니다.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얼마일까?

2023년 7월 14일 기준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87.06유로입니다.

<연도별 EU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단위: 유로)



자료: Sandbag

Q16 EU로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이 직접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 정보를 등록할 수 있나요?

A CBAM 규정 제 10조에 따르면 제3국 생산 설비(installation) 운영자도 CBAM 등록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한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결정하고 또 배출량 검증에 관련된 정보를 CBAM 신고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CBAM 신고자는 공유받은 정보를 배출량 검증 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 3국 기업의 CBAM 등록은 전환기간 이후 본 시행기간(2026년)부터 가능하며 전환기간 중에는 신고자(EU내 수입자 또는 관세대리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3국 기업의 등록 및 공개, 신고자의 이행 관련 보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집행위가 추후 이행법령을 통해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운영자가 CBAM 등록소에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의 정보가 요구됩니다. 등록은 집행위로부터 등록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단 희망 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2항

- (a) 운영자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정보
- (b) 전체 주소와 경도, 위도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소수점 여섯 자리)를 포함한 각 생산 설비의 위치
- (c) 생산 설비의 주된 경제 활동

또, 생산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 정보 결정 시 공인 인증기관(verifier accredited)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하며 검증 보고서 사본과 법안 첨부 5.에 명시된 배출량 산정 관련 자료의 사본을 검증한 시점으로부터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17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수입신고자는 탄소가격 지불 증빙과 수출 국가의 관련 법률 등 탄소가격에 대한 보상 관련된 문서를 보관해야합니다. 관련 문서는 수입신고자 및 수출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의 인증을 받고, 인증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집행위는 연평균 환율에 따라 외화로 지급된 탄소가격을 유로화로 환산하는 방법, 탄소가격을 실제 지급했다고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인증 독립자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 등을 포함,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따라 CBAM 인증서를 얼마나 차감할지에 대한 시행법률(implementing act)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다만 기지불 탄소가격에 대한 정보는 2023년 10월에 개시될 전환 기간 동안에도 제출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우리기업 중 한국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전환기 개시에 앞서 관련 정보를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18 어떤 경우에 우회방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나요?

A 집행위는 법안 제27조에 따라 아래 행위들을 CBAM 우회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상품을 약간 수정하여 CBAM 대상 품목이 아닌 품목코드에 속하도록 하는 경우(수정으로 인해 본질적인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최소 기준 150유로에 부합하도록 화물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발송하는 행위

집행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회 행위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회원국 또는 우회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자는 집행위에 우회 행위를 통보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 및 NGO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시 집행위에 우회 행위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데이터 또는 통계)를 갖춘 통보에 대해 집행위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통보 일자로부터 9개월 내 조사를 종료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방식의 우회 관행이 한곳 이상의 회원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위는 위임법률을 채택하여 대상품목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03 | 향후 일정 및 전망

Q19 ▶ 아직 법안에 모호한 점들이 많은데 앞으로 시행법률 및 위임법률 채택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A ▶ CBAM 규정이 발효되었지만 아직 내재된 배출량 산정 방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위임법률과 시행법률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며 관련 대략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3.7월 EU 집행위 제공 법안 스케줄(잠정)>

시기	위임법률	시행법률
'23.3분기	-	· 전환 기간(제35조) - 보고 의무 및 구조
'24.3분기	· 검증자 인정(제18조) · 인증서 판매 및 재구매(제20조)	· 신고자 승인(제5조 및 17조) · CBAM 등록소(제14조) · 검증자 인정(제18조) · 검증(제8조)
'25.2분기	-	· 지리적 범위(continenta shell)(제2조) · CBAM 신고(제6조) · 배출량 산정 방법론 (제7조) · 간접 배출량(부록4) · 기지불 탄소가격(제9조) · 인증서 가격(제21조) · 세관 정보(제25조) · EU ETS 무상할당과 연계(제31조)
필요 시	· 면제 국가 목록 업데이트(제2조) · 전력 관련 추가 규범(제2조) · 우회 방지(제27조)	-

집행위는 법안 발표 시 보도자료 발간 또는 이해관계자 공공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집행위 사이트를 통해 법안 발표 여부를 모니터링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위 보도자료
홈페이지




집행위 의견수렴
홈페이지




또,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 발간하는 주간 브리핑을 구독하실 경우 관련 소식을 주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 후 무역관 카카오톡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주 수요일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브뤼셀 무역관

카카오톡 채널 구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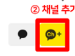


[QR코드스캔]



KOTRA 브뤼셀 무역관

안녕하세요! 브뤼셀 무역관입니다. EU 정책과 산업계 소식을 다룬 정보를 매주 공유드립니다.



채널 추가

Q20 > CBAM 대상 품목이 확대 가능성 관련 현지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A > 현지에서는 유기화합품, 폴리머 및 기존 대상품목의 다운스트림 제품 등으로 CBAM 적용이 점차 확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2년 법안 심의 시 유럽의회에서는 유기화합품(HS Code 29)과 폴리머(HS Code 39)를 대상품목군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입법기관 간 협상을 거쳐 최종 법안에는 미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품목 확대 제안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화학-에너지 산업 조사기업 ICIS는 화학 제품의 경우 시멘트 등 타제품 대비 탄소 배출량 산정이 복잡해 시행초기 단계에서 대상품목으로 미지정 되었으나, 추후 포함될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대상품목 지정 시 석유화학 제품보다는 정유제품 등 업스트림 제품군부터 우선 적용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 외 기존 대상품목의 다운스트림 제품군에 대한 언급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안 심의를 담당했던 유럽 의회 환경위 의장인 Pascal Canfin은 2022년 12월 현지 언론 Euractiv와의 인터뷰를 통해 CBAM 대상 품목을 가공한 제품을 어떻게 CBAM에 반영시킬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역내 자동차 제조사가 터키에서 철강을 수입 시 CBAM 비용을 부담하지만, 터키산 철강을 사용해 모로코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수입할 시 CBAM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철강의 경우 현재 내재된 직접배출량에만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부여되지만 향후 간접배출량 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본격 시행 시까지 집행위와 유럽의회 등 입법기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21 > 철강 산업 관련 유의해야 할 EU 차원 규제 또는 논의 동향이 있으시요?

A > 먼저 EU-미국 간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ASSA)이 있습니다. EU와 미국 양측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중단에 합의하며 2021년 10월 발표한 글로벌 협력체계인데요. 뜻이 맞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비시장적인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친환경 생산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 비시장적 공급과잉을 유발하거나 저탄소 집약도 기준에 못 미치는 협정 비참여국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양측은 2023년까지 협정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으로 관련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

- **개요** 뜻이 맞는 국가 간 협력 통해 철강·알루미늄의 비시장적 과잉공급 대응 및 친환경 생산 촉진
 - **EU-美 협력** 양측은 △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 모니터링, △동 산업 내 무역구제 및 세관 분야 협력, △ 비시장 과잉생산 대응방안* 마련 예정
 - * 실무그룹(Working Group) 통해 탄소집약도 산정 관련 공통의 방법론 개발 및 관련 데이터 공유 등
 - **역외국 참가** 동 글로벌 협정에는 일정 가입요건* 충족하는 역외국 참여 가능하며, 협정 비참여국에 대해서는 참여국 내 시장접근 제한 추진
 - * 저탄소 철강·알루미늄의 생산·교역 촉진 및 관련 정부정책 수립, 해당산업의 비시장관행 금지 등
 - **일정** EU-미국은 '23년까지 협정 초안 도출 목표로 논의 진행 중
 - * 동 협정이 EU-미 현행 정부에서 수립된 바, 양측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24년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분석

이밖에는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있습니다. 집행위는 2023년 6월 8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기존 만료 시점인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지하기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동 조치는 중국산 철강 과잉생산 및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019년 2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집행위는 조기 종료 필요 여부를 자체 조사했으나,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치가 면제되는 일부 개도국 목록 등에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 **대상품목**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착색아연도강판, 석도강판, 후판, STS 냉연, STS 선재, 형강, STS 무계목, 대형 용접관 등 총 26개 품목
- **대상국** 전세계
 - 한국은 상기 12개 품목의 주요 수입국으로 분류되어 국별 쿼터 할당, 그 외 14개 품목은 선착순으로 글로벌 쿼터 적용
- **시행기간** '19.2.2 ~ '24.6.30(1회 연장)
- **주요경과** 조사 개시('18.3.26) → 잠정 조치 부과('18.7.18) → 확정조치 부과('19.1.31) → 3년 연장 ('21.6.11) → 집행위, 1년 조기종료 검토('22.12.2) → 조치 유지 제안('23.6.8)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

01 | KOTRA 지원 사업

경제통상협력데스크

- 우리나라 산업계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거점 무역관을 데스크로 지정, 주요국 경제통상 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
 - 브뤼셀(EU), 워싱턴(미국), 베이징(중국), 도쿄(일본) 4개소 운영 중
- 브뤼셀 데스크 정보 열람

EU 주간브리핑	경제통상리포트	심층보고서	동영상 뉴스
<p>매주 수요일 우리 기업과 연관된 EU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뉴스레터</p>  <p>주간브리핑</p>	<p>국내 업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보고서</p>  <p>EU 탄소국경조정제</p>	<p>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현안에 대한 심층 보고서</p>  <p>EU핵심원자재법과 원자재 관리정책</p>	<p>주요 이슈에 대한 웨비나, 인터뷰 영상</p>  <p>KOTRA 비즈니스 채널</p>

EU 경제통상 핫라인 EU 규제·정책 관련 기업의 문의, 애로에 신속 대응

- 브뤼셀 브뤼셀무역관 **T** +32-2-205-0085 **E** jj1.yoo20@kotra.or.kr
- 국 내 통상 협력팀 **T** 02-3460-7508 **E** seyeonlee@kotra.or.kr

수출바우처 사업

-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선정된 수출기업이 일정액을 자비부담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
 -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가능

-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

- 수출바우처 신청, 및 서비스 구매 가능한 사이트



- CBAM 관련 서비스

- **서비스명** : 탄소발자국 검증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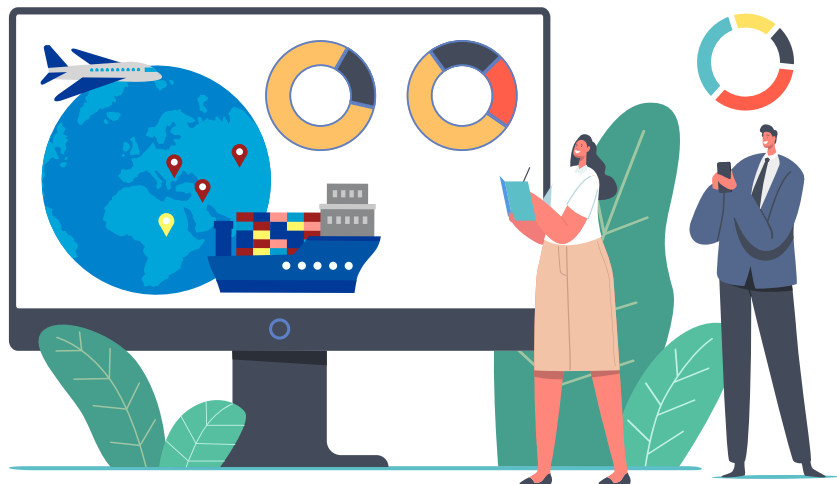
- **수행기관명** : 티유비이 슈드 코리아(TUV SUD KOREA)

- **담당자** : 진흥인 차장(Hong-In.Jin@tuvsud.com)

- **서비스내용** :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에 대한 공인 검증 및 검증보고서 발행



- **진행절차** : 킷오프 미팅 > 검증계획설정 > 서류 검토 > 현장 감사 > 개선 진행 > 검증보고서 발행

- **참고사항** : TUV SUD는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검증을 위해 인정된 검증기관



02 |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관련 EU 집행위 사이트

부처/기관명	웹사이트	
EU 집행위 CBAM 사이트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further-info	
EU 집행위 CBAM 시행법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이트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873-EU-Green-Deal-reporting-obligations-during-the-transitional-period-of-the-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국내 지원 부처 및 기관

부처/기관명	웹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www/main.do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환경부	http://me.go.kr/home/web/main.d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www.kotra.or.kr/index.d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www.kosmes.or.kr/intro/kosme_intro.html	

부처/기관명	웹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Main/appl/Main.asp	
한국표준협회	https://www.ksa.or.kr/ksa_kr/index.do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index.do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index.do	
국제환경규제지원센터	https://www.compass.or.kr/	

03 | CBAM 법안 조항표

탄소국경조정제 수립에 대한 규정(Regulation EU 2023/956)

구분	조항	내용
1장. 주제, 범위, 정의	1조	주제
	2조	범위
	3조	정의
2장. 승인 CBAM 신고자의 의무 및 권리	4조	상품 수입
	5조	승인 신청
	6조	CBAM 신고
	7조	내재 배출량 계산
	8조	내재 배출량 검증

구분	내용	
2장. 승인 CBAM 신고자의 의무 및 권리	9조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10조	운영자 및 제3국 시설 등록
3장. 관할 당국	11조	관할 당국
	12조	집행위
	13조	업무상 기밀 유지 및 정보 공개
	14조	CBAM 등록소
	15조	위험 분석
	16조	CBAM 등록소 내 계정
	17조	승인
	18조	검증기관 인정
	19조	CBAM 신고 검토
4장. CBAM 인증서	20조	CBAM 인증서 판매
	21조	CBAM 인증서 가격
	22조	CBAM 인증서 제출
	23조	CBAM 인증서 재구매
	24조	CBAM 인증서 취소
5장. 제품 수입 시 적용 규칙	25조	제품 수입 시 적용 규칙
6장. 법안 시행	26조	벌금
	27조	우회
7장. 위임 이행 및 위원회 절차	28조	위임 이행
	29조	위원회 절차
8장. 보고 및 검토	30조	집행위 검토 및 보고
9장. EU ETS 무상할당과의 조화	31조	EU ETS 무상할당과 CBAM 인증서 제출 의무
10장. 전환 기간	32조	전환기 범위
	33조	상품 수입
	34조	특정 세관 절차 보고 의무
	35조	보고 의무
11장. 최종 조항	36조	발효
첨부1.	품목 및 온실가스 목록	
첨부2.	제7조 1항 관련 직접배출만 고려되는 품목 목록	
첨부3.	제2조 관련 동 규정의 범위가 아닌 제3국 및 영토	
첨부4.	제7조 관련 내재배출량 산정방식	
첨부5.	제7조 5항에 따라 내재된 배출량 계산에 사용된 정보에 대한 장부 작성 요건	
첨부6.	제8조에 따른 검증 원칙 및 검증 보고서의 내용	

CBAM 전환 기간 보고 의무에 관한 이행법률

(2023년 8월 17일 발표 초안 기준, 최종본 발표 시 변동 가능)

구분	내용
1장. 주제 및 정의	1조 주제
	2조 정의
2장. 보고 관련 의무 및 권리	3조 신고자의 보고 의무
	4조 내재 배출량 산정
	5조 추정치 사용
	6조 역내 가공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보고
	7조 탄소가격 정보의 보고
	8조 CBAM 보고서 제출
	9조 CBAM 보고서 수정 및 정정
3장. CBAM 보고 관련 행정	10조 CBAM 전환기 등록소
	11조 집행위의 CBAM 보고서 점검 및 정보 사용
	12조 집행위 평가
	13조 불완전, 부정확한 CBAM 보고서
	14조 관할 당국의 CBAM 보고서 평가 및 정보 사용
	15조 기밀 유지
4장. 법안 시행	16조 제재 조치
5장. CBAM 전환기 등록소 관련 기술 요소	17조 중앙 시스템 범위
	18조 전자 시스템 컨택 포인트
	19조 CBAM 전환기 등록소 구조
	20조 CBAM 전환기 등록소 협업 조건
	21조 CBAM 이용자 접근 관리
	22조 CBAM 트레이더 포털
	23조 회원국 관할 당국을 위한 CBAM 관할 당국 포털
	24조 집행위를 위한 CBAM 관할 당국 포털

구분	내용	
5장. CBAM 전환기 등록소 관련 기술 요소	25조	CBAM 등록소 백엔드 서비스
	26조	접근 관리 시스템
	27조	행정 관리 시스템
	28조	회원국의 신원 및 접근 관리 시스템
	29조	전자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이용 및 관리
	30조	전자 시스템의 변경 및 유지
	31조	전자 시스템의 일시적 장애
	32조	공통 요소의 사용 및 기능 관련 교육 지원
	33조	개인 정보 보호
	34조	데이터 접근 및 가공 제한
	35조	시스템 소유권
	36조	시스템 보안
	37조	CBAM 전환기 등록소 관리자
	38조	데이터 보존 기간
39조	전자 시스템 평가	
-	40조	발효
부속서1	CBAM 보고서 제출 필요 정보	
부속서2	품목별 정의 및 생산 경로	
부속서3	설비 단위의 배출량 데이터, 생산공정에 따른 배출량,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 및 기저불 탄소가격 결정 규칙	
부속서4	설비 운영자가 보고 신고자에 공유 필요한 내용	
부속서5	EORI 정보	
부속서6	역내 가공 관련 데이터 요건	
부속서7	국가 시스템 데이터	
부속서8	설비 단위의 직접 배출량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표준 요소	
부속서9	전기와 열의 생산에 대한 참조 효율 계수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KOTRA 브뤼셀 무역관 +32-2-205-0081
KOTRA 통상협력팀 02-3460-7508
국제표준자료번호 979-11-402-0720-6 (93320)
979-11-402-0718-3 (95320) (PDF)

Copyright @ 202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동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단순 참고자료로 KOTRA의 공식의견이나 전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또는 규정 해석에 대한 어떠한 책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 (CBAM)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